

#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4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0. 26.

발 의 자 : 양이원영·장철민·송옥주  
안호영·우원식·이용빈  
이수잔<sup>비</sup>·이탄희·도종환  
유정주·윤미향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

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 따라 재활용(업사이클) 등 녹색신산업의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 정책추진과 지속적 재정보화가 어려움.

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산업 정의에 재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환경산업 정의를 재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으로 개정함(안 제2조제3호).

##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라목(중전의 나목) 중 “보전·관리를”을 “보전·관리·개선을”로, “시설·재료 또는”을 “재화 및”으로 한다.

“환경산업”이란 대기, 수질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, 기술의 개발·적용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
가. 환경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피해의 측정·예방·최소화·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, 소재·부품·장비,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
나.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(이하 “재활용”이라 한다)하는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 보전·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
다.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“환경산업”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·제작·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대기, 수질, 소음·진동,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·예방·최소화·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·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환경산업”이란 대기, 수질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, 기술의 개발·적용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피해의 측정·예방·최소화·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, 소재·부품·장비,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(이하 “재활용”이라 한다)하는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보전·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</u></p>

<신 설>

나. 그 밖에 환경의 보전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

4. ~ 7. (생략)

다.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
라. ----- 보전·관리  
·개선을 ----- 재화  
및 -----  
-----  
-

4. ~ 7. (현행과 같음)